#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유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9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윤종오·박주민·김준혁

황운하 • 전종덕 • 정혜경

복기왕・김동아・김 윤

김재원 · 김준형 · 박수현

용혜인 의원(13인)

# 제안이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음. 헌법을 위반한 계엄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며,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신임을 배신한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계엄 122일만에 파면되었지만,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 변호, 방조한 자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음. 이들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계엄을 정당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임.

이들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 질서를 바로세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임. 또한 앞으 로 벌어질 반헌법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내란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하여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헌법적인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실효성 있게 하며 헌정 질서의 기틀을 흔든 내란행위자를 단죄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내란행위 진상규명 등을 위한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3명으로 하되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제외함 (안 제8조).
-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시까지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위원회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며, 정원 외로 30명 이내의 공무원 등의 파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3조).
- 마.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정, 동행명령, 검증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부터 물건 제출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33조부터 안 제35조까지).
- 사. 위원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함(안 제39조).
- 아.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40조).
- 자.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 하여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내란행위"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행위를 말한다.
  - 1.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 2.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 3.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고

- 위법한 포고령을 모의, 작성하고 발령한 행위
- 4.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
- 5.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납치. 감금. 고문 등을 모의하고 실행을 준비한 행위
- 6.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5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 또는 방조한 행위
-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5조에 따른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 1. 제2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사건
  - 2.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또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 또는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 또는 행위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내란행위와 관련된 사건
  - 4.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내란행위와 관련된 진상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제5조(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내란행위진상조사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 3. 조사 완료 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결과의 처리요구
  -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제2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한 사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3명으로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제2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에 따른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가 아닌 워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 ④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된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보고를 종료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지체없이 임명하여야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활동한다.

- ②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5. 제3조와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해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 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 의 대상자인 경우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 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수 있다.
-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 제24조(조사의 개시)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내란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6. 내란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

다.

-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①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10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동행 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7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에 대한 검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9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될

- 경우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5조의 조사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 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 제31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조사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

- 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 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절 청문회

-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 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5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6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 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

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아니한다.
- 제38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 조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39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사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발 또는 수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수사 및 재판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제361조의3 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4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

의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42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자격사칭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직원(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 다)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0조(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 제51조(벌칙) ①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 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2. 제4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 나 방해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제53조(내란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